

"남의 탓 하지말고 내가 먼저 부패추방"

예 산 군

정보통신망

우 340-80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 전화 (041) 330-2211	/ 전송 (041) 330-2215
기획감사실	실장 최봉일 담당	인영환	담당자 이상섭 e-mail: k28879@hanmail.net

문서번호 기감45112-706

시행일자 2003.08.18 (5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수 신 예산군의회의장

참 조 의회사무과장

선 량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3. 8. 19	
	번호	388	결 재
	처리과		
	담당자		공 함
	심사자		심사일

제 목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제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처리전말보고서 1부. 끝.(별송)



2002회 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의회사무과 의사답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
				담당	실.과장		
세출예산관리의 부처장	초등학교 모의 의회 운영 참석 보상금 :	1,500천 원	초등학교별로 모의의회 운영 신청을 받은 결과 삼교 용동초등학교에서 12월중에 실시 할 계획 이었으나 학교 사정상 취소하여 부득이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주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문화공보실 건전생활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 말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
			담당	인		
제출에 관리의 부칙정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 보상금)			예산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처금규칙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2002년 도 본 예산에 500,000원이 계상되었으 나 년 말까지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을 지급하지 못했음.	마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신축적으로 산감조치, 여유자금을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하자 못했음.	1	종결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 담당>

처분 요구	제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부 당	부 당	부 당	부 당
			부 당	부 당				
세출예산 관리의 부적정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산에 차감조치하여 타사업에 활용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교육이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에 차감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기하겠습니까.	처분지시요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교육이 없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에 차감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기하겠습니까.	부 당	부 당	부 당	부 당	부 당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처분요구	제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학인	증명서번호	처리종결여부
				/		
세출관리의 부적정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음은 부당함. - <예산 미집행 내역> - 가정복지회관 수선비 2,000천 원	앞으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종합연월실 건축답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처리종결부
			담당	설.과장	증명서 번호	
세출예산관리의 부작정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 성등을 면밀히 분석, 편성 하여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해야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시 삭감조치 하여야 하나 불용처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된 2,921천원 중 1,437천원을 2002.7.30 읍·면에 재 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 나머지 1,486천원은 사 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세출예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 	/			종결

2002회계년도 결산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처리 분야 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학 인		처리 종결 여부
				증명서 번호	설·파장	
			세출예산편성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1		완료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지역경제과 공업담당)

처분요구	제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 답답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답답	실과장			
○ 예당지구 소수력발전소 설치 : 300,000천 원	예당지구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당초 국비 300백만 원, 군비 150백만원 총사업비 450백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제성이 낮고 한전 전력 수매단가 하락, 철관터널 보강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군비 150백만원은 2002년도 2회 추경에 예산 산감 조치 하였고 국비 300백만원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환급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음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급 당	인 설 과 장	증 명 서	번 호	여 부	처리종결
세출예산관리의 부적정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삽입 조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부당함 - <예산 미집행 내역> - 용자금회수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 1,000천원 /	앞으로는 미집행 예산이 발생할 경우 정리추경에 삽입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완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담당	인 과장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제출 예산은 예산편성으로는 여사한 사례 성기본 지침에 의거 가 발생되거나 필요성 등을 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면밀히 분석·편성하여 조기에 조성하고, 편성된 예상은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방자치단체에 신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적정	○ 세출 예산은 예산편성으로는 여사한 사례 성기본 지침에 의거 가 발생되거나 필요성 등을 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면밀히 분석·편성하여 조기에 조성하고, 편성된 예상은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방자치단체에 신청 부적정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필요한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예산서 신감조치하여 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예산은 예산편성으로는 여사한 사례 성기본 지침에 의거 가 발생되거나 필요성 등을 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면밀히 분석·편성하여 조기에 조성하고, 편성된 예상은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방자치단체에 신청 부적정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필요한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 예산서 신감조치하여 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	종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 전말보고서

(사회복지과 예산복지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급 당	학 급 당 실 과 장	증 명 서 번 호	처 리 총 결 부
			학 급 당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액 계상 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2002. 12. 31에 예산을 전용함은 부당함. <p>« 예산전용 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복지관리→ 일반운영비 삭감: 6,000천 원 -가정복지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부조 보조 삭감: 40,000천 원 -사회복지관리→ 사회보장 적수혜금 삭감: 2,500천 원 -가정복지관리→ 사회보장 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증: 48,500천 원 						완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 리 전 말	학 당	학 인	증 명 서	처 리 중 결 부	변호 여
사고이월의 부적정		<p>○ 당해연도에 사업비 지출을 완료 하지 못한 것이 예상될 경우 명 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 한 것은 부 적정함.</p> <p>〈 사고이월내역 〉</p> <p>-공동묘지 개장 : 644,024천 원</p>	<p>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 겠음.</p> <p>3</p>				완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문화공보실 문화예술담당)

처분요구 제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담 당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여
			학 담 당	설 .과장		
처분요구	상기의 사업과 산이 낭비액도에 차출을 원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 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임.	상기사업과 산이 낭비액도에 차출을 원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 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임.	3	총		적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 전말보고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체납당)

처분요구 제 목	처 분 지 시 요 구	처 리 진 말	처 리 증 명 서		처 리 종 결 부 부
			답 당	설 과 장	
사고이월의 부적정	O 예산상설시장 환경정비 예산액: 140,000천원,(11.1)	<p>이후 예산 집행시에 법규를 연찬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음</p> <p>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의 사업과 같이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임</p>			3 여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 전말보고서

(지역경제과 공업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처리 종결 부 여
		화 인	증명서 번호	
	<p>○ 관자전문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설계 : 284,000천원(12. 05)</p> <p>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 출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 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 우에는 명시이월 처리하여 익년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p> <p>상기의 사업과 같이 당해연도에 지 출을 원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행위 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회 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임.</p>	<p>이후 사고이월 예산 집 행 시에 법규를 연찬하 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 록 주의하겠음.</p> <p>2</p>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산림축산과 산림경영 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처 리 종 결 여 부
			회 인	증 빙 서	번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피해복구비: 33,712천원 ○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p style="text-align: right;">부적정 사고이월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처리하여 익년도에 집행하여야하나 	3	✓	완결
		<p style="text-align: right;">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으로 철저한 법규연찬과 상황판단으로 예상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으로 철저한 법규연찬과 상기의 사업과 같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임.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건설과 농지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답 담	설.과장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고이월의 부적정 111,678천원(12. 14)	세출예산증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처리하여 이 년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나, 상기의 사업과 같이 당해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 리하게 자총원인행위를 하 고 사 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회계질서 지키지 않도록 할것임. 를 문란 시키는 행위임.	제2회추경예산(2003.10.24)에 사업비 가 성립되어 사업을 낸도내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동절기공 사증지기간에 해당되어 부득이 사고 이월하여 2003. 3. 13사업을 완료 하였음. 향후 사업기간이 동절기임 경우 명 시이월 절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 진하지 않도록 할것임.	3 	3 	3 	3 	3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 담당>

처분구 요구	제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처리종결부 여
			확인	답당	
계속비 이월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지방재정법제40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계속비사업은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 속비의 사업운성년도까지 차례 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군소각 시설설치사업의 경우 1999년도 계속비 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 도 예산현액이 9,941,228,700원 이었으나 지출액은 1,380,000원 에 불과한바 이는 계속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을 추진한 것임	예산군 소각시설설치사업은 현 재 조성중인 쓰레기종합위생마 립장 부지위에 설치하는 관계로 예산지출액이 적었으며 본 사업 에 대한 임찰안내서 용역을 완 료하였고 조달청 발주 의뢰단계 에 있어 정상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비제도의 취지에 어 긋나지 않도록 계속비 이월사업 비 적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	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건설과 농지 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
- 예비비집행의 부작정	산불피해지구내 용배수로 설치 - 지출결정액 79,000천 원 - 집행액 54,854천 원 - 임대료 24,146천 원	광시면 산불로 불에 탄 pcf용수관 교체공사 설계시 재사용이 가능한 용수관을 준치사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임찰잔액을 포함하여 24,146천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다. 향후, 예산요구서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임.		5	종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도시과 상하수도납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담 당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계속비 사업은 소요경비의 당해연도에 증 계속비 이월 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설립자사업) 상교하수종밀처 리시설처사업)	○ 연도별 계획된 소요경 비가 당해연도에 적절하 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 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 는지 못한금액은 당 해 계속비의 사업은 차례차 성으로 연도까지 있도록 이월하여 사용되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으나, 본 사업에 2001년도 계속비 예 산에 편성되어 2002 년도 예산현액이 4,000,000천원이었으 나 지출액은 72,041 천원으로 이는 계속 비제도의 차지에 어 긋나게 추진한것임.	4	4	4 종 결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 전말보고서

(지역경제과 공업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자사요구	처리 전 말	학 인 담당 실.과장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피해이체민 전기요금 지원 (지출결정액10,350천원, 집행액 1,090천원, 집행잔액9,259천원) 	<p>이후 예비비 집행시에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p> <p>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나,</p> <p>예비비 집행의 부작정</p>	 		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 리 전 말	학 인 증명서		처리종결부
				담당	과장	
○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 금전과정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군 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 체운영조례”를 제정,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에 대하여는 그공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하여 공사감독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 반하였음.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 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 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 한 예산군건설공사 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에 제정되었음을 영조례”에 있도록 (시가지차선 도색공사)	6	6	총 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주민지원과 지역개발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실·과장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 례에 따른 명예감독 관 미선임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자 않도록 조 치 하겠음			6	완료
		2002하천리 도로포장공사 및 2002삼교지구 도로포장공사 명예감독관운영 미흡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 리 전 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답 당 실 과 장			
		집수리사업 예산을 수요(민간 위탁대상) 상황도 제대로 파악 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0. 23 까지 사업을 방치하였다가 이후 예산을 전용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집수리사업 대상자의 수혜를 저연 시켰음.		7		완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재무과 세정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인	증명서 번호	처리종결부 여
			담당	실.과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체납자별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기존 방식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정수불능에 대하 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체납자 재산공매 - 부동산 : 13명 450백만원 - 자동차 : 6명 30백만원 ○ 신용불량자등록 - 12명 105백만원 ○ 자동차변호판 영치 - 169건 439백만원 ○ 관리사업체 한 - 46건 47백만원 			8		진행 중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재무과 세입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부 처리 종결
			부 당	증명서 발 행	증명서 변호여	
자동차세 세입예산 운용의 부적정	세입예산은 면밀한 세입추계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추계 되어야 하고 회계증수납액의 증 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예 산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하여 여야 함에도 예산현액보다 과다 수납한 203,892천 원을 예산에 반영치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부당함.	자동차세는 추경세입예산 편 성후 12월에 과세되고, 연도회 계기(2.28)까지 채납세정수에 총력을 기울여 수납액(정수 액)이 세입예산액을 초과하 였으나 앞으로는 차량의 증가율, 차 납세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세입추계로 제작 예상과 수납액의 차이 를 최소화하고자 함. ○ 자동차세 세입예산 운용현황 - 예산현액 2,850,000천 원 - 수납액 3,053,892천 원 - 과수납액 203,892천 원(7.1%)	9	9	9	종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지 역 경제 와 교통 행정 담당)

처 불 구 요	주 차 장 제 목 제 요	처 불 지 시 요 구	처 리 전 발	학 인	증 명 서	처 리 종 결 부
담 당	설 · 과 장				변 호	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징수 미흡	○ 주·경 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 태료는 정수 특성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차태 료 체납자에 대하여 득축정 발부 및 차량 압류처분등의 행정조치 에 의존하고 있어 정수실적이 위 와 같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 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자동차 압류조치 및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앞으로는 차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득축정 발부 습니다.	10			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경영관리실 관광사업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학 인	증명서	처리 종결부
				담당	실.과장	번호
		덕산온천의 우수성과 인근 관광자원의 재력 및 지속적 으로 여건을 홍보하여 적극 유치하고, 기준 개혁의 큰틀 안에서 조성계획변경 등 력적인 검토를 실시 하고, 현실성 있게 지가격을 조정도록 개발조합과 협의하는 등 덕산온천 체비자 매각에 총력을 기울 여주기 바람.	덕산온천관광지 체비자 매각 덕산온천관광지 건의 우수성의 고속도로의 등에 비치하여 별리 흥 보하여 민간자본이 자자 며, 덕산온천 개발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비자가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11		추진중